



제309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5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원주영 의원 등 열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공공 캠핑장의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,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설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·운영 위탁시 사용료 수납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나.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다. 캠핑장 위탁 관리·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 신설(안 제12조)
- 라. 캠핑장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문화관광과
- 라. 입법예고 : 2025. 1. 24. ~ 2025. 1. 31. (7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캠핑장의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, 위탁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은,
위탁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, 캠핑장 운영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, 캠핑장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캠핑장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 캠핑장 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자료

남양주 가족쉼터 운영현황

1 가족쉼터 개요

- 위치 : 수동면 내방리 237-1번지 일원
- 관리운영 : 위탁운영
 - 수탁자 : 고로쇠마을운영위원회(대표자 : 오석배)
 - 위탁기간 : 2021. 7. 1. ~ 2026. 6. 30.
 - 위탁사무

- 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,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 사무
- ②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개보수, 사용료·이용료 징수·수납 등 시설관리 사무
- ③ 지역주민,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무

- 시설현황 (부지면적 : 8,115㎡)

숙박시설	총 계		일반야영장	자동차야영장	캐빈	
	47면		20면	25면	2면	
편의시설	관리실	화장실	개수대	주차장	창고	부대시설
	1개소	2개소	2개소	29면	1개소	1개소

2 추진연혁

- 2010.06. : 가족쉼터 운영 개장
 - 운영주체 : 2011. ~ 2013. → 시 직영
 - 운영방법 : 개소당 5,000원 징수 → 평상(30개소)
- 2014.06. : 내방2리 마을회(대표자 : 이장 이종숙) 1차 위탁 운영
 - 위탁기간 : 2014. 06. 01. ~ 2015. 12. 31. ※ 2015. 08. : 야영장업 등록
 - 운영방법 : 개소당 5,000원 징수 (평상 고정식 23개소·이동식 7개소)
※ 연간 수입의 10% 세외수입 조치
- 2016.04. : 내방2리 마을회(대표자 : 이장 이종숙) 2차 위탁 운영
 - 위탁기간 : 2016. 04. 01. ~ 2017. 03. 31.
 - 운영방법 : 개소당 5,000원 징수 (평상 고정식 23개소·이동식 7개소)
※ 연간 수입의 15% 세외수입 조치
- 2017.05. : 내방2리 마을회(대표자 : 이장 이종숙) 3차 위탁 운영
 - 위탁기간 : 2017. 05. 05. ~ 2017. 10. 31.
 - 운영방법 : 개소당 5,000원 징수 (테크 25개소)
※ 연간 수입의 10% 세외수입 조치
- 2017.12. : 캠핑장 공사 시행(2017. 12. ~ 2018. 11.)에 따른 운영 중단
- 2019.01. : 몽골문화촌 관리계획에 의한 운영 중단
- 2021.06. : 위탁 계약 체결(수탁자 : 고로쇠마을운영위원회) 및 운영 재개
- 2023.05. : 가족쉼터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휴업(2023. 5. 23 ~ 7. 7.)
- 2023.11. : 관리위·수탁 변경 계약 체결
 - 야영시설 : 자동차야영장 11면 → 25면
 - 편의시설 : 개수대 1개소 → 개수대 2개소, 주차장 37면 → 주차장 29면

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·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제20조(수탁재산의 관리)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관리상황의 보고 등)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·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, 관리수탁자,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,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자치법규명

-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3조(보험가입) ①시장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현재 수동관광지 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(고로쇠마을운영위원회)가 공공캠핑장 보험 가입을 하여 별도의 비용발생하지 않음.
- 「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 박선영